

2021년도  
본청1차[건설교통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 감사내용 》

### ■ 기간 및 범위

- 2021. 6. 26. ~ 7. 2.(5일간) / 2018. 6월부터

###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 감사결과 》

### ■ 총 지적건수 : 14건

###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4건 (주의 6건, 시정 8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2건 / 2,476,29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 수범사례 》

### ■ 오지마을 100원 무지개택시 주 6일 확대운영

- 운행횟수 확대⇒이용인원 증가(연 이용인원 23,235명, 연 이용 횟수 : 22,374회)⇒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확대

### ■ 어서실 농촌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축사단지를 철거하고 청년창업농 보육센터와 농촌살아보기임대주택 건립 등을 조성하여 정주여건개선 및 청년인구유입을 도모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4부. 끝.

## 주요 지적사항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14건	주의 6 시정 8		2건 2,476,290원
1	◦ 각종 휴가 사용 시 시스템 입력 등 부적정	주의		
2	◦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소홀	시정		
3	◦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관리교육 소홀	주의		
4	◦ 민원사무 처리 지연	주의		
5	◦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6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 소홀	시정		회수 107,290원
7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시정		
8	◦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시정		
9	◦ 공유재산 임대료 등 체납관리 소홀	시정		
10	◦ 각종 임대수입 등 부가가치세 관리 소홀	시정		
11	◦ 피복비 집행 부적정	주의		
12	◦ 주정차과태료계좌 관리 소홀	시정		
13	◦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2,369,000원
14	◦ 시설공사 설계변경 집행 전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각종휴가 사용 시 시스템 입력 등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내역

사용일	성 명	직 급	구분	부적정사항	비고
18.09.19.	A	□□6급	기타	가족돌봄휴가(운동회참석)해당	구분
18.12.13.~19.	B	□□6급	경조사휴가	휴가사유 미입력	사유
19.01.07.	C	□□5급	기타	가족돌봄휴가(자녀졸업식참석)해당	구분
19.05.30.	D	□□6급	기타	가족돌봄휴가(참관수업)해당	구분
19.06.20.	E	□□8급	포상휴가	사유에 가사정리 입력	사유
19.06.27.	F	□□7급	경조사휴가	포상휴가(비상근무특별휴가)해당	구분
19.08.06.~12.	G	□□6급	기타	장기재직휴가에 해당	구분
19.09.26.	H	□□7급	수업휴가	가족돌봄휴가(운동회참석)해당	구분
20.05.12.	I	□□7급	수업휴가	포상휴가(비상근무특별휴가)해당	구분
20.05.14.	H	□□7급	포상휴가	사유에 가사정리 입력	사유
20.05.15.	H	□□7급	포상휴가	사유에 가사정리 입력	사유
20.05.15.	J	□□6급	포상휴가	사유에 병원지료 입력	사유
20.05.20.	K	□□6급	기타	포상휴가(비상근무특별휴가)해당	구분
21.02.08.	K	□□6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21.02.25.	L	□□9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21.03.11.	M	□□7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21.03.12.	N	□□6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21.03.30.	L	□□9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21.03.31.	O	□□9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21.04.05.	L	□□9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21.04.05.	M	□□7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21.04.12.	O	□□9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21.05.03.	P	□□8급	기타	포상휴가(비상근무특별휴가)해당	구분
21.05.12.	I	□□7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21.05.13.	L	□□9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근무일자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휴가는 행정기관(부서)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로서, 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예시: 비상근무 특별휴가(행정과-7643), 자녀 졸업식 참석, 본인결혼 등)입력하고 결재권자는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허가토록 되어 있으며,

- 행정과에서는 공무원 특별휴가 사용 및 복무제도(특별휴가, 당직근무) 관련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 준수사항 (휴가사용 오입력도 복무관리 지적사항에 해당)
  - 당직 대체휴무시 반드시 근무일 입력 : (예시) 1.2(일) 일직근무
  - 연가를 제외한 특별휴가 : 증빙 반드시 첨부(첨부파일) / 사유입력 철저
    - ⇒ 경조사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사유 자세히 입력
  - 서울행정시스템 미 구현 특별휴가 : 임신검진휴가(모성보호휴가), 간병휴가
    - ⇒ 반드시 휴가구분 기타로 선택하고 세부 휴가사유 기재

- 그럼에도, 건설교통과에서는 18. 09. 19. 외 8건에 대해 휴가구분을 잘못선택하여 등록하였고, 18. 12. 13. 외 4건에 대해 휴가사유를 부적정하게 기재하였으며, 21. 02. 28. 외 10건의 대체휴무에 대해 당직근무일을 미입력 하는 등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소홀

【현 황】

○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

연번	인계자		인수자		담당일	전자결재 여부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1	□□8급	Q	□□8급	W	2020.11.16.	부	교통팀
2	□□8급	R	□□9급	X	2020.11.16.	부	도로팀
3	□□9급	S	□□9급	Y	2020.11.16.	부	농촌개발팀
4	□□6급	T	□□7급	M	2021.01.10.	부	건설관리팀
5	□□7급	U	□□8급	Z	2021.01.10.	부	건설관리팀
6	□□7급	V	□□7급	AA	2021.01.10.	부	교통팀
7	□□6급	K	□□6급	D	2021.01.10.	부	도로팀
8	□□7급	D	□□8급	AB	2021.01.10.	부	도로팀
9	□□6급	J	□□6급	K	2021.01.10.	부	농촌개발팀
10	□□8급	AC	□□8급	AD	2021.01.10.	부	지역공동체팀
11	□□8급	AD	□□7급	AE	2021.03.08.	부	지역공동체팀

【위법부당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 제61조에 따라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철저[행정과-19286(2020. 9.11.)호]」 공문을 시행하여 모든 군 소속 공무원은 인사이동(조직개편, 업무분장 변동 포함)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를 이행하되, 팀장급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출력하여 행정과로 제출하고, 팀원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부서장 결재 후 자체보관 토록 하였음.
- 그러나, 군수님 지시사항 이후 시설사업소 직원들의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현황]과 같이 11건의 인사이동(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조정)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부서장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누락된 인계·인수를 이행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현 황】

관리부서	사업명	대상자		채용 교육	정기교육				비고
		근로자수	근로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통팀	202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9	2020.01.28.~04.26.	미 실시	1 (미 충족)	미 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통팀	2020년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4	2020.01.06.~12.28.	8시간	미 실시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교통팀	2020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보조	4	2020.01.06.~12.28.	8시간	미 실시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교통팀	202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9	2020.05.11.~07.31.	미 실시	해당 없음	6시간	미 실시	해당 없음	
교통팀	차량등록소 운영	1	2020.01.01.~12.31.	미 실시	미 실시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공무직
교통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9	2020.08.03.~11.27.	미 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시간	미 실시	
교통팀	202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10	2021.01.25.~04.30.	8시간	6시간	미 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통팀	2021년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3	2021.01.04.~11.30.	미 실시	2시간 (미 충족)	미 도래	미 도래	미 도래	
교통팀	2021년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2	2021.02.01.~12.30.	미 실시	2시간 (미 충족)	미 도래	미 도래	미 도래	
교통팀	2021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보조	3	2021.01.04.~11.30.	미 실시	2시간 (미 충족)	미 도래	미 도래	미 도래	
교통팀	2021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보조	2	2021.02.01.~12.30.	미 실시	2시간 (미 충족)	미 도래	미 도래	미 도래	
교통팀	차량등록소 운영	1	2021.01.01.~ 12.31.	해당 없음	3시간	5시간	미 도래	미 도래	공무직
교통팀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10	2021.05.03.~08.20.	3시간 (미 충족)	해당 없음	미 도래	미 도래	해당 없음	

※ 건설교통과 제출 감사자료(p.95) 재구성



##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sup>1)</sup>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 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신규 채용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의 신규채용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며, 채용 이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행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러나, 2020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교통과에서 채용한

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가.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등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황]과 같이 신규 채용 시 교육 및 정기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원사무 처리 지연

【현 황】

○ 처리 지연 내역

민원명	처리기간 (단축일수)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
도로정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7(5)일	-	18.11.08.	18.11.14. 18:00	18.11.16. 09:10	1일10분
건설업자의기재사항변경신고-전문건설업	즉시	-	20.01.13.	20.01.13. 16:23	20.01.15. 10:47	1일3시간24분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신고	즉시	-	20.06.08.	20.06.08. 16:45	20.06.10. 08:23	1일1시간15분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	즉시	-	20.08.10.	20.08.11. 10:26	20.08.13. 11:33	2일8분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	5일	-	20.11.17.	20.11.24. 13:42	20.11.28. 22:43	3일4시간18분
개간사업시행인가-10ha미만	17일	-	20.12.09.	21.01.04.	21.01.07. 10:02	2일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7(5)일	-	21.01.25.	21.02.01. 09:10	21.02.02. 13:45	1일3시간35분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즉시	-	21.02.08.	21.02.08. 12:00	21.02.09. 14:30	1일1시간30분
도로정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7(5)일	-	21.03.19.	21.03.26. 09:21	21.03.29. 10:37	1일16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	즉시	-	21.04.01.	21.04.01. 16:01	21.04.05. 09:32	1일2시간31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3일	-	21.04.09.	21.04.14. 15:40	21.04.16. 09:32	1일2시간52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3일	-	21.05.13.	21.05.18. 17:24	21.05.20. 20:09.	1일36분

【위법부당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정확·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및 제 19조(처리기간의 계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하고,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 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그럼에도 건설교통과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8. 11. 08. 접수된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민원 외 11건에 대해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처리하거나, 완료된 민원에 대하여는 즉시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입력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현 황】

○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 부적정 현황

건 명	편성과목	적정과목	비고
공기청정기 임차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2020
공기청정기 임차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2021
유선방송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2019
유선방송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2020
유선방송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2020

○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건 명	집행내용	집행과목	지출일	부적정 사유	비고
도로유지보수 작업도구(예초기) 구입비 지급	예초기 4대 (451,000×4=) 1,804,000원	사무관리비	20.10.14.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편성없이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로 집행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는 사무관리비로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4. 피복비, 5. 급량비, 6. 임차료를 편성토록하며, 공공운영비로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연료비, 3. 시설장비유지비, 4.

피복비, 5. 급량비, 6. 임차료를 편성토록하고 차량 선박비,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구입 및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등 교부의 경우에만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공공요금은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등의 공익사업에 대해 정부가 결정하거나 법률적으로 관여하는 요금을 말하며, 제세공과금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국세 등의 여러 세금과 공적 부담금 등을 말함.
- 그럼에도, 건설교통과에서는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로 편성해야 할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유선방송수신료를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특히 유선방송수신료의 경우 지출품의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생략하고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만으로 지출 처리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예초기구입에 대해 예산편성없이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107,29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 소홀

【현 황】

### 1.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산정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근무 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수당 시간 (분)	적정 시간 (분)	비고
			구분		(분)	(분)			
2019.10.03.	□□6급	B	휴일	일반	11:18	15:53	275	240	교통업무추진
2019.10.05.	□□6급	C	토요일	일반	09:38	15:16	338	240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2019.04.19.	□□6급	B	일요일	현업	08:13	17:54	960	480	해외입국자수송 지원(중복지급)

### 2.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실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	합계	금액		
합계			30	108	138	1,624,250	30	99	129	1,516,960	107,290	
□□6급	B	11,634	10	50	60	698,040	10	49	59	686,400	11,640	2019.10월
□□6급	C	11,634	10	17	27	314,110	10	16	26	302,480	11,630	2019.10월
□□6급	B	12,002	10	41	51	612,100	10	34	44	528,080	84,020	2020.04월

###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행정과에서 시행한 영동군 시간외근무 관리·운영 계획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인정범위가 1일 4시간, 월57시간이며, 비상근무 시 일일 상한시간은 8시간, 월70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교통과에서는 [현황1]과 같이 □□6급 B 외 1명에 대하여 적정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하였고, [현황2]와 같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107,290원을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과오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107,29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현 황】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

연도	공개 세부내역	미공개 세부내역	비고 (미공개 기간)
2018년	-	2018. 6월 ~ 12월	6개월
2019년	-	2019. 1월 ~ 12월	12개월
2020년	-	2020. 1월 ~ 12월	12개월
2021년	-	2021. 1월 ~ 현재	5개월

※ 영동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교통과에서는 2015년 5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미공개된 사용내역을 공개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현 황】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처리실적

대상업무	감사자 추출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	적기처리 건수	적기 처리율	적기승인 건수	적기 승인율	미처리 건수	비고 (미승인 건수)
지방재정	161건	126건	78.3%	120건	74.5%	100건	79.4%	35건	20건
세외수입	289건	289건	100%	274건	94.8%	146건	50.5%	0건	80건
서울행정	107건	69건	64.5%	3건	2.8%	0건	0%	38건	69건

【위법부당사항】

○ 전 부서에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확인하고 적기에 조치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그러나, 건설교통과에서는 2018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내역(감사자추출건수)에 대하여 적기처리 하였음에도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은 건수가 169건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현재까지 73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하고 있지 않는 등 공직비리 사전예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미조치 건에 대해 조속히 조치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유재산 임대료 등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부적정 관리 현황

[단위:원]

과목	납부자	본세	가산금	부과일	최초납기일	최종고지일	비고 (부적정사항)
국유재산임대료	-	9,710	1,020	18.03.12.	18.04.02.	18.12.14.	연1회이상 독촉 미이행
시군구재산임대료	-	97,850	10,290	18.03.12.	18.04.02.	19.06.11.	연1회이상 독촉 미이행
국유재산대부료	-	4,370	100	19.03.11.	19.04.30.	19.03.18.	재고지 및 연1회이상 독촉 미이행
국유재산대부료	-	4,070	60	19.05.09.	19.05.31.	19.06.11.	재고지, 및 연1회이상 독촉 미이행
시군구재산임대료	-	120	0	19.09.03.	19.09.18.	19.09.03.	연체료 미부과, 재고지 및 연1회이상 독촉 미이행
국유재산변상금	-	27,360	1,360	20.03.03.	20.03.15.	20.07.27.	연1회이상 독촉 미이행
국유재산변상금	-	11,840	370	20.03.03.	20.03.15.	20.07.27.	연1회이상 독촉 미이행
국유재산대부료	-	10,270	0	20.07.28.	20.08.14.	20.07.28.	연체료 미부과, 재고지 미이행
시군구재산임대료	-	9,950	0	20.10.05.	20.10.20.	20.10.05.	연체료 미부과, 재고지 미이행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9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체료를 징수하며,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 위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함.
  - 그럼에도 건설교통과에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및 대부료 등 9건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연체료 부과 하여 다시 납부고지를 하지 않거나 연1회 이상 독촉을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미조치된 체납건에 대해 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각종 임대수입 등 부가가치세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1. 대상계좌

- 계좌번호: \*\*\*-\*\*-\*\*\*\*\*

- 개설일자: 07.11.15.

- 계좌명의: 영동군청

- 사용용도: 각종 임대수입 등 부가가치세 관리

※대상과목: 계속도로점용료, 구거의목적외사용료,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대부료, 도로공간사용료, 시군구재산임대료, 시도유재산임대료, 일시도로점용료

- 계좌잔액: 9,755,620원[2021.05.31.기준]

### 2. 입출금내역[2018.06.01.~2021.05.31.]

[단위 : 원]

기존잔액 [18.06.01기준]	기간중 입금총액	기간중 신고납부총액	잔액 [21.05.31기준]	비고
4,227,270	47,320,780	41,833,400	9,755,620	미처리잔액 증가 5,258,350원

### 【위법부당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대부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부과 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통합고지 메뉴에서 해당세입(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병행 부과하고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아울러, 매출신고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홈텍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부과 목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등의 사유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민원과 부가가치세 신고 담당자에게 신고·납부 요청을 하여야 함.
- 그럼에도 건설교통과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자 중 법인 및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경우에만 발행처리 및 신고·납부하였고, 발행요청이 없는 일반개인의 경우 신고·납부처리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건이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처리계좌에 장기간에 걸친 부가가치세 미신고분 잔액이 발생하였음,

####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부가가치세 계좌 잔액에 대해 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 감사결과 처분서

-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피복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피복비 집행현황

지출일	예산과목	구입내역	구입처	지출금액(원)	비고
19.12.11.	사무관리비	주정차 지도단속 및 교통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피복 구입 (300,000원*5벌)	-	1,500,000	
20.10.28.	사무관리비	주정차 지도단속 및 교통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피복 구입 (250,000원*6벌)	-	1,500,000	공무직 포함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른 사무관리비(201-01) 중 피복비 부분을 살펴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교통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제복이 아닌 일반 기성복을 구입하여 교통팀 전 직원(2020년의 경우 공무직 포함)에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주정차과태료계좌 관리 소홀

【현 황】

### 1. 대상계좌

- 계좌번호: \*\*\*\_\*\*\*\*\_\*\*\*\*\_\*\*
- 개설일자: 11. 3. 21.
- 계좌명의: 영동군청
- 사용용도: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입금 오류 건에 대한 임시수납 및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자동이체
- 계좌잔액: 335,700원[2021.05.31.기준]

### 2. 임시수납 세입조치 내역

연번	입금일	세입일	금액	거래기록사항	비고
1	18.06.07.	-	70,800	31다67**	
2	18.07.09.	-	70,800	김**	
3	18.08.20.	18.08.22.	400,000	한**	1일지연
4	18.12.04.	18.12.21.	32,000	배**	
5	18.12.31.	19.01.23.	40,000	09수78**	
6	19.02.08.	20.01.09.	32,000	이**	
7	19.02.18.	19.02.27.	162,640	남**	
8	19.03.05.	20.01.09.	40,000	장**	
9	19.07.25.	20.01.09.	141,600	김**	
10	19.08.01.	20.01.09.	239,680	양**	
11	19.09.09.	20.01.09.	317,520	김**	
12	19.10.31.	20.01.09.	32,000	44하06**	
13	19.11.25.	20.01.09.	40,000	김**	
14	19.12.02.	20.01.09.	592,960	남**	
15	19.12.06.	20.01.09.	32,000	20호58**	
16	19.12.19.	20.01.09.	32,000	남**	
17	19.12.31.	20.01.20.	283,920	이**	
18	20.01.02.	20.01.09.	284,880	54너16**	
19	20.01.03.	20.01.09.	50,000	****	

연번	입금일	세입일	금액	거래기록사항	비고
20	20.01.06.	20.01.09.	332,160	김**	2일지연
21	20.02.11	20.02.28.	32,000	박**	
22	20.02.19.	20.02.28.	16,000	서**	
23	20.03.03.	20.03.11.	375,920	박**	
24	20.03.23.	20.04.02.	125,760	윤**	
25	20.04.20.	20.05.26.	41,200	강**	
26	20.04.29.	20.05.26.	161,040	32구87**	
27	20.05.06.	20.05.26.	40,000	이**	
28	20.05.13.	20.05.26.	383,360	***	
29	20.05.14.	20.05.26.	227,360	서**	
30	20.05.28.	-	32,000	53하18**	
31	20.07.01.	-	62,800	김**	
32	20.09.16.	20.09.23.	188,800	배**	
33	21.01.07.	21.01.07.	32,000	민**	정상처리
34	21.02.02.	21.02.02.	82,400	남**	정상처리
35	21.02.15.	21.02.15.	251,120	전**	정상처리

### 3.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부적정 입금내역

연번	내 용	입금일	자동이체일	금액	비고
1	월정산수수료(18. 9월분)	18.09.13.	18.09.10.	2,400	
2	월정산수수료(18.10월분)	18.10.11	18.10.10.	3,920	
3	월정산수수료(18.12월분)	-	18.12.10.	1,280	
4	월정산수수료(19. 2월분)	-	19.02.11.	8,720	
5	월정산수수료(19. 4월분)	-	19.04.10.	3,600	
6	월정산수수료(19. 6월분)	-	19.06.10.	3,680	
7	월정산수수료(19. 7월분)	-	19.07.10.	3,040	
8	월정산수수료(19. 8월분)	-	19.08.12.	4,640	
9	월정산수수료(19. 9월분)	-	19.09.10.	3,600	
10	월정산수수료(19.11월분)	19.12.18.	19.11.11.	3,840	
11	월정산수수료(19.12월분)	19.12.18.	19.12.10.	1,920	
12	월정산수수료(20. 1월분)	20.01.14.	20.01.10.	10,880	
13	월정산수수료(20. 2월분)	20.02.11.	20.02.10.	1,280	
14	월정산수수료(20. 6월분)	20.06.12.	20.06.10.	2,400	
15	월정산수수료(20. 7월분)	20.07.16.	20.07.10.	2,960	
16	월정산수수료(20. 8월분)	20.08.11.	20.08.10.	1,440	
17	월정산수수료(20. 9월분)	-	20.09.10.	2,560	
18	월정산수수료(20.11월분)	20.11.11.	20.11.10.	1,360	담당자 사비로 입금처리
19	월정산수수료(20.12월분)	20.12.09.	20.12.10.	1,840	담당자 사비로 입금처리
20	월정산수수료(21. 1월분)	21.01.18.	21.01.11.	1,200	담당자 사비로 입금처리
21	월정산수수료(21. 2월분)	-	21.02.10.	1,520	
22	월정산수수료(21. 3월분)	-	21.03.10.	1,280	
23	월정산수수료(21. 4월분)	-	21.04.12.	1,840	
24	월정산수수료(21. 4월분)	-	21.05.10.	1,680	

##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20조에서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1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함.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 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처리된 경우 납기일까지 해당계좌에입금 처리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노력·관리하여야 함.
- 그럼에도. 건설교통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추정차과태료 임시입금 계좌에 입금된 총 35건 중 단3건에 대해서만 정상처리하였고, 32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는데, 대부분 입금일로부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 세입조치하였고, 특히 이중 4건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또한, 매월 10일에 인출처리토록 되어있는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에 대해서도 총24월 분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는데, 인출일이 지난 후에 지출처리 된 건이 9건, 예산집행처리 하지않고 담당자가 개인 사비를 입금하여 처리한 것이 3건, 특히 12건에 대해서는 인출처리는 되었으나 계좌입금처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해당계좌의 세입미조치 잔액 및 수수료 미입금건에 대해 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2,369,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도급자	안전관리비 계약액	목적 외 청구액	목적 외 사용항목	비고
<b>6건</b>				<b>2,369,000</b>		
가로(보안)등 조도개선사업	소 계			<b>380,000</b>		회수
	18.11.30.~ 18.12.17.		4,432,932	290,000 90,000	공사중 안내표지판(대)2 제경비	
영동군 가로등(1권역) 양방향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소 계			<b>320,000</b>		회수
	19.08.19.~ 19.09.05.		740,492	242,492 77,508	공사중 안내표지판(대)2, 신호봉2 제경비	
영동군 가로등(2권역) 양방향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소 계			<b>471,000</b>		회수
	19.08.19.~ 19.09.16.		1,110,707	351,700 119,300	접근금지 표지판(소)2, 라바콘16 제경비	
영동군 가로등 양방향관제시스템 구축사업(1권역)	소 계			<b>586,000</b>		회수
	20.05.06.~ 20.06.03.		1,092,965	445,465 140,535	공사중 안내표지판(소)4, 신호봉2 제경비	
영동군 가로등 양방향관제시스템 구축사업(2권역)	소 계			<b>238,000</b>		회수
	20.05.06.~ 20.06.03.		979,763	178,126 59,874	접근금지 표지판(대)1, 라바콘15, 신호봉2 제경비	
상촌,양산,용화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소 계			<b>374,000</b>		회수
	19.03.20.~ 19.05.16.		974,088	282,088 91,912	무전기2 제경비	

##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2천만원, 2020.7.1.부터)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가로(보안)등 조도개선사업(2018)>의 5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상에 사용명목 중 ‘공사안내 입간판’, ‘라바콘’, ‘신호봉’, ‘무전기’ 등 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 청구한 총금액 2,369,000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과다지급된 공사비 2,369,0000원을 세입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설계변경 집행 전 일상감사 미이행

【현 황】

(단위: 천원)

공사명	변경집행일 (계약일)	계약 방법	도급자	계약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가율	
매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04.17. (19.08.23.)	경쟁 입찰	-	244,891	308,980	26.2 %	
봉곡교 내진보강공사	18.12.18. (18.08.21.)	경쟁 입찰	-	340,241	409,651	20.4 %	

### 【위법부당사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일상감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제21조(일상감사의 처리),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객관적 위치에서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제도인 일상 감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초과하거나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에서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계약 건에 대하여 집행 전 일상 감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매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최종 집행 전에 거쳐야 할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